

檢 討 報 告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日 時 : 2009. 4. 8(수) 10:00

行政建設委員會

專門委員 명 금 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립합창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립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하고, 마포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창단원의 연령규정 중 상한 연령을 “만 50세”에서 “만 55세”로 연장하여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기 해촉된 단원들 중 활동을 원하는 “만 55세” 초과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둠으로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 신설된 주요내용 >

- (1) 안 제2조에서 “마포구구립합창단”내에 소속해 있던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마포구구립합창단” 과 “마포구구립소년소녀 합창단”으로 명칭을 분리하였음
- (2) 안 제3조에서 “마포구구립합창단” 과 “마포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포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3)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합창단의 연령을 “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에서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개정하므로써 현행보다 5년을 더 연장 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완화하였음
- (4) 부칙 제2조제2항에서 2008년 8월 31일자로 해촉되었던 단원 중 “만 55세”를 초과하는 자가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 위촉하므로써 신축성을 부여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구립합창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합창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포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 구민의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합창단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나이 제한은 그들이 가진 노하우, 경험, 경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으로 국가적, 사회적 낭비이며 결국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노령화를 더욱 재촉하므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포구에 거주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연령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철폐하고 실버관련 문화예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